

#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5. 4. 21.

제안자 : 정상혁의원 외

## □ 수정 이유

- 조례안중 불명확하거나 불합리적인 문구를 알기 쉽고 명확히 하며,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한편,
-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위원 위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수정 (안 제5조제9호)
  - 도지사, 부지사,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
    - 도지사, 부지사,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업무추진비
- 주민참여의 폭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촉 위원대상 추가 (안 제9조제4항제2호)
  - 위촉직 위원 : 대학교수, 언론인, 변호사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  - 위촉직 위원 : 대학교수, 언론인, 변호사, 사회단체 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불필요한 조항 삭제
  -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(안 제9조제5항)
  -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(안 제9조제8항)

#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9호중 “부서 및 기관”를 “직속기관 및 사업소”로 한다.

안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항중 “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”와 제8항을 삭제한다.

2. 위촉직 위원 : 대학교수, 언론인, 변호사, 사회단체 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